

#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본회의]

### 순서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2건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고자 : 김홍섭 위원장

####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2건
- 보고자 : 신미정 위원장

####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0건
- 보고자 : 김향란 위원장

####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7건
- 보고자 : 최준규 위원장



# 의사일정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2. 11.(목) 10:00>

부의안건	비고
<b>【제2차 본회의】</b>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 2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 의회운영위원회 3 ~ 4
4. 거창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	
5.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위원회 5 ~ 14
6.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8.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0.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경남연구원 출연안	
15.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산업건설위원회 15 ~ 21
17.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6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22. 휴회의 건	
<b>【산회】</b>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12.11.)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 I.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경과	1
2. 세입예산안 대비표	1
3. 세출예산안 대비표	2
<b>4. 심사결과</b>	<b>3</b>
5. 변동조서	3
6. 조건부 승인조서	3

## II.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경과	4
2. 제안사유	4
3. 근거법령	4
4. 기금운용 변경계획	5
5. 질의 및 답변 요지	7
6. 토론 요지	7
7. 수정안 요지	7
<b>8. 심사결과</b>	<b>7</b>
9. 소수의견 요지	7
10. 기타 필요한 사항	7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1. 24.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라. 상정일자 :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12. 10. 상정·의결)

### 2. 세입예산안 대비표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예 산 안	기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36,942,453	822,608,962	14,333,491	1.74
일반회계	소 계	802,356,490	787,764,081	14,592,409 1.85
	지방세수입	40,982,547	40,982,547	0 0.00
	세외수입	25,748,768	24,779,777	968,991 3.91
기타특별회계	지방교부세	323,797,000	321,717,000	2,080,000 0.65
	조정교부금등	31,456,415	29,515,000	1,941,415 6.58
	보조금	265,949,034	257,630,658	8,318,376 3.23
	보준수입등내부거래	114,422,726	113,139,099	1,290,627 1.13
공기업특별회계		34,585,963	34,844,881	△258,918 △0.74

### 3. 세출예산안 대비표

#### 가.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합계	836,942,453	822,608,962	14,333,491	1.74
일반회계	775,698,144	762,744,761	12,953,383	1.70
특별회계	61,244,309	59,864,201	1,380,108	2.31
공기업	34,585,963	34,844,881	△258,918	△0.74
기타	26,658,346	25,019,320	1,639,026	6.55

#### 나. 위원회 및 회계별

(단위 : 천원)

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계	836,942,453	822,608,962	14,333,491	1.74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소계	802,356,490	787,764,081	14,592,409 1.85
	의회운영위원회	1,301,197	1,301,197	0 0.00
	총무위원회	455,468,597	451,657,404	3,811,193 0.84
	산업건설위원회	345,586,696	334,806,480	10,781,216 3.22
공기업특별회계	34,585,963	34,844,881	△258,918	△0.74

## 4. 심사 결과

---

### 가.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가결
- 특별회계 : 원안가결

### 나.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가결
- 특별회계 : 원안가결

## 5. 변동 조사

---

- 세입예산안 : 해당없음
- 세출예산안 : 해당없음

## 6. 조건부 승인조서

---

- 세입예산안 : 해당없음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해당없음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1. 24.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라. 상정일자 :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12. 10. 상정·의결)

###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2조

## 4.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 변경(안)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

##### - 연도별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4년도별 조성액ⓐ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25년도별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증 감 ⓓ=ⓑ-ⓒ	
계	63,543,893	32,961,886	42,200,000	△9,238,114	54,305,779
재정안정화계정	51,419,320	31,147,936	41,000,000	△9,852,064	41,567,256
통합계정	12,124,573	1,813,950	1,200,000	613,950	12,738,523

##### -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변경 수입액	당초 수입액	증감	항목	변경 지출액	당초 지출액	증감
합 계	96,505,779	65,708,028	30,797,751	합 계	96,505,779	65,708,028	30,797,751
전 입 금	31,410,959	1,410,959	30,000,000	예 치 금	54,305,779	23,508,028	30,797,751
예 치 금 회 수	63,543,893	63,539,358	4,535	기타지출	41,000,000	41,000,000	0
이자수입	1,550,927	757,711	793,216	예 수 금	1,200,000	1,200,000	0

#####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고
		'23년도 말 현재액	'24년도 말 현재액ⓐ	'25년도 말 현재액ⓑ	증 감 (ⓑ-ⓐ)	
예치금	농협	80,838,769	63,543,893	54,305,779	△9,238,114	

## ● 사회복지기금 조성 현황

### - 연도별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25년도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증감 ⓓ=ⓑ-ⓒ	
계	2,552,824	85,776	43,667	42,109	2,594,933
노인복지계정	1,109,378	34,334	17,600	16,734	1,126,112
자활계정	1,443,446	51,442	26,067	25,375	1,468,821

### -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변경 수입액	당초 수입액	증감	항 목	변경 지출액	당초 지출액	증감
합 계	2,638,600	2,637,158	1,442	합 계	2,638,600	2,637,158	1,442
예치금 회수	2,552,824	2,552,824	0	비용자성 사업비	41,600	41,600	0
이자수입	78,888	79,334	△446	예치금	2,594,933	2,595,558	△625
기타수입	6,888	5,000	1,888	기타지출	2,067	0	2,067

###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고
		'23년도말 현재액	'24년도말 현재액ⓐ	'25년도말 현재액ⓑ	증감 (ⓑ-ⓐ)	
예치금	농협	2,523,115	2,552,824	2,594,933	42,109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6. 토론 요지 : 생략**

---

**7.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12.11.)

---

# 조례 · 규칙안 심사보고서

---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목 차

1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	10

##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11. 24.

나. 발의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홍섭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거창군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포상대상, 포상권자 및 포상의 종류를 정함(안 제2조~제4조)
-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에 대해 정함(안 제5조~제7조)
- 포상방법, 포상 추천 등에 대해 정함(안 제8조~제11조)

- 공적심사위원회 등에 대해 정함(안 제12조~18조)
-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취소 등에 대해 정함(안 제19조~제2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지방자치법」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창군의회의장이 포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포상 대상을 외국인 및 다른 지역 거주자도 포함 가능해 포용적이라 할 수 있음.
-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에는 포상의 종류별로 목적별 수여가 가능하도록 분명히 구분하였으며, 기준 또한 구체적이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에서는 부적격자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상 대상과 엄격히 구분하였음.

- 안 제11조에서 포상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보했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안 제12조에서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간소화한 장점이 있으나, 그에 따른 공정성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사항을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15조 역시 대상자 선발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심사의 적정성을 확보함.
-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이중포상 금지, 포상대장 등재,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함.
-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써 승인 요건이 구체적이며 공익성이 강조되어 있고, 승인 취소 시에는 해명 기회 부여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
- 전반적으로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적심사위원회 및 제척·기피 조항으로 이해충돌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1부.

##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가 시행하는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공헌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거창군 외의 지역 거주자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거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3.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또는 선행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사람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대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관내 학교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포상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1. 근무기간(수공기간) 1년 미만인 경우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 공적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부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기피 대상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을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 및 방침과의 부합성
2. 공적내용의 객관적 타당성
3. 표창에 따른 사회·조직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공적발생시기와 표창시기의 적정성

② 제1항의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제16조(중복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중복하여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18조(포상취소)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4. 같은 공적으로 또는 사유로 중복하여 포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여 대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또는 패나 부상의 훼손·분실 등으로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사실을 표시하는 명칭(이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지역의 문화예술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비영리 행사로 본다.
- ④ 제1항의 행사 주최자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2. 행사계획서(안전관리 계획 포함한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4.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⑤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사용승인 취소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경우
2. 행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후원명칭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 의장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즉시 사용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11. 24.

나. 발의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홍섭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거창군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본 규칙 폐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거 「거창  
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 1부.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 거창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

거창군의회 포상규칙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12.11.)

---

#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 목 차

1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민원소통과 1
2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문화예술과 6
3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복지정책과 11
4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복지정책과 16
5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행복나눔과 19
6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24
7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27
8	거창군 현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 31
9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 35
10	경남연구원 출연안	기획예산담당관 42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11. 24.

나. 발의자: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11명)  
(신중양, 이재운,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중양 의원]

### 가. 제안이유

○ 특이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안 제7조)

○ 민원 상담 종료 및 제한(안 제8조)

○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안 제9조)

○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겪는 폭언·폭행·성희롱 등 업무상 위험 요소를 줄이고, 심리적·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안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는 “필요한 시설·장비”라는 추상적인 현행 조문을 개정하여 구체적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민원 상담 종료 및 제한)를 신설하여 민원 상담 종료 기준과 출입제한·퇴거 조치 기준을 마련한 것은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
- 안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를 신설하여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직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며,
- 특히,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전담 대응팀 지정은 실질적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사무의 위탁)는 기존 제8조에서 변경된 것으로 내용상 변화는 없음.
- 해당 조례 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확보, 법적 대응 체계 마련,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공무원 인권 보호 강화만큼 반대급부적으로 민원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없도록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해 보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3.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비치
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
5. 전수녹음(송신인에게 사전에 모든 통화내용 녹취를 공지한 후 자동으로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 운영, 1회당 전화·면담 권장시간 운영
6. 폭언·폭행 등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민원 상담 종료 및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홍보해야 한다.

1. 장시간·반복·폭언·성희롱 민원상담: 종료 기준
2. 흥기소지, 폭언·폭행, 반복 민원제기 등 공무방해: 출입 제한·퇴거 기준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

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11. 24.

나. 발의자: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11명)  
(신중양, 이재운,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중양 의원]

####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거창군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조문 구성을 보면 목적→정의→군수의 책무→시책 수립→지원 조항→협력 및 보존→부칙 순으로 논리적 흐름이 잘 짜여 있음.
- 안 제2조에서 「영상진흥기본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용어 정의를 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군수의 책무와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행정 집행의 책임 소재가 분명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영상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은 타당하며, 문화산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전략적으로 유익하다고 보여짐.
- 지원 대상이 영상물 제작자, 상영관, 법인·단체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어 포괄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콘텐츠 중심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점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일 것이라 판단됨.
- 다만,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계획 수립의 주기와 평가 및 개선 절차, 재정 지원

기준과 절차 등 실행 단계에서의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시행 규칙 제정, 성과관리 체계 마련, 민관협력 모델 구체화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산업을 말한다.
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영상문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문화·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3. 관내 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4. 영화·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통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영화·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6. 영상 콘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영상문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① 군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군 소재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군수는 군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위기기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11. 24.

나. 발의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11명)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 가. 제안이유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기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기구 지원과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위기기구의 발굴 및 발굴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위기기구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안 제1조(목적)에는 위기가구 발굴과 민관 협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음.
- 안 제2조(군수의 책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성을 부여하였으나,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선언적이므로, 구체적인 실행 의무나 평가 기준이 있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위기가구의 발굴)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발굴대상)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발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는 포괄 조항은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임.
- 안 제5조(위기가구 신고 등)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방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익명 신고 가능 여부와 허위 신고, 중복 신고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은 추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6조(포상금 지급 등)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신고자 연간 한도 (30만원)를 정하여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합리적 제한 규정이라고 보여짐.
- 안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의무화하였으며, 제9조(정보보호)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음.
-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위기가구 빨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1부.

##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이하 “사회보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위기가구의 발굴)** 군수는 국가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하 “복지 사각지대”라 한다)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발굴대상)** 제3조에 따른 발굴대상 위기가구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 소외·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기가구 신고)**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선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거창사랑상품권 등으로 하되, 같은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③ 군수는 신고대상이 제1항의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④ 같은 가구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군수가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이 신고자인 경우
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
3.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9조(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11. 24.

나. 발의자: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향란 의원]

###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목욕비 및 이·미용 효도권 지원 사업의 이용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효도권 지원 사업 이용자 나이 확대 85세→75세(안 제7조의2제1항)  
○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고령층에 대한 복지 혜택 확대 및 행정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효도권 지원 나이 기준을 75세로 낮춤으로써 대상자가 기준 573명에서 954명(2025.11월 기준)으로 381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월 21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96,000천원 정도로 예상됨.
- 이는 거창군의 재정 규모로 보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투입 예산 대비 정책적·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짐.
-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고령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할 수 있으며, 법령 인용 표현을 정비하여 행정 문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호”로 “85세”를 “75세”로 한다.

제7조제2항, 제7조의3제1항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호”로 각각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11. 24.

나. 발의자: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11명)  
(이홍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홍희 의원]

#### 가. 제안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정의하고 있어, 법적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높임.
- 안 제3조에서는 행정책임자인 군수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어, 예산 편성과 정책 실행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한 윤리적 장치를 마련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예방함.
- 안 제7조에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시하여, 피해자 지원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함.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 피해자 중심 접근이 다소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추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부.

##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과 존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과 신상정보(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피해자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과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책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
5.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1. 24.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이재훈]

#### 가. 제안이유

○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심신 안정을 위한 특별 휴가와 공무원의 생일축하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거창군 공무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의 세부기준 삭제함(현행 제23조제2항·제7항)  
1)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재기재 삭제

○ 특별휴가 확대함(안 제23조제6항·제7항)  
1) 성희·성폭력·성매매·스토킹·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공무원: 5일 이내  
2) 공무원 자신의 생일: 1일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심신 안정 및 공무원의 생일축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신 안정 조치로서 특별휴가 도입은 인권 중심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생일 휴가 신설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워라밸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안 제23조제2항 및 제7항을 삭제함으로써 복잡한 단서 조항 없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심신 안정을 위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⑦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그달 또는 다음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7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1. 24.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 가. 제안이유

○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외 이전 및 공장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해석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투자기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2조·제22조)

○ 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함(안 제5조)

    1) 성폭력범죄 사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유치 특별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

    1) 특별지원 범위에 개별입주기업 및 관내기업 지원을 포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투자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위원회 구성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거창군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음.
- 안 제2조(정의)에서 “투자기업”의 정의를 신설과 증설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함.
- 투자 유형을 세분화함으로써 지원 기준의 명확성과 행정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었으며, 특히, 폐건물 매입까지 포함한 점은 도심 재생 및 유류자산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안 제5조(위원의 해촉)에서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높였음.
- 안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적용 조문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군수의 판단과 군의회 동의만으로 특별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2조(관내기업 지원)에서는 “증설”에서 “신설·증설”로 변경함으로써 기존에는 증설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신설까지 포함함으로써 신규 투자유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관련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자기업”이란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신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건축물을 신축
    - 2)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 3) 폐건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매입
  - 나. 증설: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5조제4호를 제7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군의회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증설”을 “신설·증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현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1. 24.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 가. 제안이유

○ 군민들의 적극적인 현혈 참여를 위하여 기념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혈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신설하여 현혈을 장려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현혈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지원 신설함(안 제6조)

- 1) 현혈자에게 기념품 등 지원
- 2) 현혈장소 제공 등 행정지원

○ 현혈장려를 위한 홍보 등을 정함(안 제7조)

○ 법령 재기재 삭제·정비함(현행 제8조·제9조)

- 1) 「혈액관리법」 제7조의2·제12조, 「지방자치법」 제2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거창군의 헌혈 장려 정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 안 제1조에서는 상위 법령 명시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이중 기재를 방지하였음.
-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헌혈 권장과 정신 고취를 위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군수가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의 요청 시 임시 헌혈 장소 설치에 대해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헌혈 접근성을 높이고, 장소 지정에 유연성을 더해 지역 내 헌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에서는 군수가 헌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를 명시하여 홍보 수단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적 실행력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매체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어 유연성을 더하였음.
- 안 제8조 비밀 엄수의 의무와 안 제9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보아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며, 행정적 실효성 강화, 헌혈 참여 유도, 홍보 및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헌혈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거창군민 (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군수는 헌혈권장활동”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 활동”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헌혈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지원) ① 군수는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장려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2. 군이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7조(헌혈장려를 위한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헌혈장려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헌혈인식 개선을 위한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
2. 헌혈 관련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헌혈장려와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1. 24.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 가. 제안이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증장려 대상에 인체조직을 신설·확대하고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폐지·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기증 장려 대상에 인체조직을 신설함(안 제명 및 전 조문)

○ 정의, 군수의 책무, 계획수립을 정함(안 제2조~제4조)

○ 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정함(안 제5조)

○ 예우 및 지원을 정함(안 제6조)

- 기증등록 창구 설치 및 홍보를 정함(안 제7조)
-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삭제·정비함(현행 제4조~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거창군의 기존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안 제1조에서는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근거하여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등록 활성화와 기증자·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여 상위법과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으며,
- 기존 목적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인체 조직까지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에서는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등 용어 정의를 법률에 따라 구체화하여 법률 용어와 일치시켜 혼란을 줄이고 기준 조례의 모호한 정의를 개선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군수가 기증 권장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실질적 정책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4조에서는 군수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획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행력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개인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 가능하도록 민간 협력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진료비, 시설 이용료,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사망 위로금 지급 등 예우 규정을 두어 기증자 또는 희망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제공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위로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행정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7조에서는 보건소에 등록 창구 설치와 등록기관의 업무 수행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읍·면사무소에서도 등록이 가능해야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문 상담 인력 배치나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존 조례 제4조부터 제9조에 해당하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또는 실효성 부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특별히 어긋남이 없으며, 기존의 형식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홍보 전략 다변화, 상담 기능 강화 등 세부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
3. 장기등기증자·조직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 장기등기증희망자·조직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 및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기증자, 기증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 장려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2.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3. 군이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② 군수는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경우(뇌사자에 한정한다) 예산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에 따른다)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군민에게 기증 또는 기증희망하는 사람

**제7조(기증등록 창구 설치 및 홍보)**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참여 확산을 위해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 창구를 보건소 등에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홍보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하거나 통보받은 사람은 제6조에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하거나 통보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진료비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②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③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 경남연구원 출연안

### 〔 심사 보고서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1. 2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1. 2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 가. 제안이유

- 군의 당면 주요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적 정책  
발굴을 위해 경남도 출연기관인 (재)경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출연개요

1) 출연대상 : 경남연구원

2) 사업내용

- 거창군 군정 방향에 부합한 부문별 비전·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연구
- 거창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등

○ 출연금 요구액 : 50,000천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인구 감소, 지역경제·문화·관광 활성화 등 거창군이 직면한

복합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정책연구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경남연구원은 경상남도 산하의 공공정책 연구기관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서도 경남연구원과의 협업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정책 실현 가능성과 행정 연계성 측면에서 적합한 출연 대상으로 판단됨.
- 요구액 5천만원(군비100%)은 정책연구 사업으로는 비교적 소규모에 해당하는데, 단순 용역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범위와 산출물의 구체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의 법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특히,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자체의 출연이 가능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12.11.)

---

## 조례 및 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목 차

1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5
3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4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5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6	2026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7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27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11. 24.

나. 발의자 :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라. 상정일자 : 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재운 의원)

- 소규모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를 통해 무허가 상태인 축사를 적법하게 양성화해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각종 지원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또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돼지나 가금류 등의 거리 규정은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의 이격 거리 중 소규모 농가의 경우 200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 (안 별표 개정)
- 나.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 800미터 이내인 거리 규정을 1,000미터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안 별표 개정)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환경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11. 06. ~ 11. 1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일부제한 구역의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 조정을 통하여 소규모 농가 보호 등 지역 현실과 환경 영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의 경우 제한구역을 300미터 이내를 유지하면서도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00미터 이내로 완화하였음.

- 이는 소규모 축사는 환경·악취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생계형 소규모 사육의 필요성과 신규진입이나 후계농 창업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불법·편법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면적 합산 규정을 신설하여 편법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인 것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돼지·가금류의 제한구역을 8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의 환경기준 강화흐름에 부합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돼지·가금류의 신축 가능 지역이 급격히 줄어듦으로써 축산업 기반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축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체부지 발굴지원, 기존 농가의 시설현대화 유도 등 보완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7. 토론판별 요지 : 없음

##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11. 24.

나. 발의자 :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라. 상정일자 : 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향란 의원)

- 바둑은 세대 간 교류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통한 두뇌 스포츠로서, 바둑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바둑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바둑진흥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체육시설사업소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1. 11. ~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제정조례안은 바둑 진흥·지원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로 국민 정신건강, 여가 증진 등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조례로 제정취지는 적정하다 할 것임.
- 바둑진흥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 시책 마련 조항을 두고 있어 법률 위반 사항은 없음.
- 거창군은 2025년 경남도민 체육대회에서 바둑 부분 군부 최우수를 차지한 바 있으며 거창한국기원을 비롯하여 바둑 관련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어 본 조례 시행에 따른 기반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바둑단체의 정의에서 회원수 등 세밀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등의 세부 내용이 없어 지원 시 형평성 논란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 별도지침을 마련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조례 제정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7. 토론효지 : 없음

## 8. 수정안 요지 : 없음

##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1.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 라. 상정일자 : 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건축과장)

- 상위법령 개정 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70조의13, 제79조, 별표 1의2, 별표 19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0. 31.~11. 18.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70조의13, 제79조, 별표 1의2, 별표 19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0. 31.~11. 18.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일치성 확보와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과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20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입목축적 변경은

현행 규정은 산지전용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을 따랐으나,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제정한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20조의2의 2항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13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중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된 바 개정안을 통하여 경미한 사항(면적 10% 이내 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면적 10% 이상 변경)를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타당함.
- 안 제50조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장 증설 가능 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하여 상위 법령(영 제79조)과 일치시켜 기업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 별표18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생산관리지역에 경로당 건축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농촌지역 고령화를 반영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타당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적합성 및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1. 24.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라. 상정일자 : 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수도사업소장)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 가구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요금 경감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 및 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함(안 별표 4)

- 1) 대상: 병역명문가
- 2)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수도법」 제38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안전총괄과 협의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0. 20.~11. 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구를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수도법」 제38조제4항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돗물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명문가를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부칙을 통하여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설(제3조)함으로써, 조례 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을 확보함.

-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바람직함.
- 감면율을 살펴보면 지원목적과 대상의 성격이 유사한 국가 유공자 등과 동일한 감면 수준으로 형평성이 유지되며 세입 감소 규모가 크지 않아 군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과 기존 감면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7. 토론요지 : 없음

## 8. 수정안 요지 : 없음

##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1. 24.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라. 상정일자 : 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수도사업소장)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 가구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요금 경감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 및 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함(안 별표 7)

- 1) 대상: 병역명문가
- 2)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65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안전총괄과 협의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0. 20.~11. 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구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하수도법」 제65조제1항에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병역명문가를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부칙을 통하여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설(제3조)함으로써, 조례 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을 확보함.

-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바람직함.
- 감면율을 살펴보면 지원목적과 대상의 성격이 유사한 국가 유공자 등과 동일한 감면 수준으로 형평성이 유지되며 세입 감소 규모가 크지 않아 군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과 기존 감면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7. 토론요지 : 없음

## 8. 수정안 요지 : 없음

##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2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1. 24.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라. 상정일자 : 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환경과장)

### ① 2026년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가조수월지구)

#### 1. 제안이유

- 임도를 신설하여 산불과 산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임산물 운반 등 산림경영의 효성을 높이며, 더불어 항노화 힐링랜드와 고견사 방문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1) 사업비 : 1,999백만원(국 1,399, 도 300, 군 300)
- 2) 위치 : 가조면 수월리 산11, 산12일원
- 3) 기간 : 2026. 2. ~ 12.

4) 사업 내용 : 임도 신설 2.46km

- 콘크리트포장 1.42km, 반중력식 옹벽 127m, 토사절취 11,924m<sup>2</sup> 등

##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용도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계						373,042	6,678	3,625	
취득	토지	가조면 수월리 산11	임	301,141	2,588	1,453	2025 ~ 2026	임도 개설	농림 지역
		가조면 수월리 산12		71,901	4,090	2,172			

### \* 임도 편입 예정지 부분 매입

\* 기준가격 산정 근거 : 공시지가 \* 면적

- 가조면 수월리 산11 m<sup>2</sup>당 561원

- 가조면 수월리 산12 m<sup>2</sup>당 531

## 다. 추진경과

- 1) 2024. 12. 20. : 타당성 평가 실시
- 2) 2025. 5. 16. : 실시설계 완료
- 3) 2025. 9. 8. : 문화유산 변경허가

## 라. 향후계획

- 1) 2025. 11. :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
- 2) 2025. 12. : 토지보상 및 등기 완료
- 3) 2026. 2. : 사업 착공
- 4) 2026. 12. : 사업 준공

## 마. 기대효과

- 산림재해 예방 및 신속 대응으로 항노화힐링랜드 등 산림휴양시설과 고견사 등의 문화유산 보호 가능.

###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1] 참조

### 4. 관계법령 : [붙임2] 참조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3.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① 2026년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가조수월지구) 건은

- 힐링랜드 주차장~고견사를 연결하는 2.46km의 산불진화임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편입면적 6,678㎡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가조수월지구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은 주목적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및 진화활동과 산악사고 신속대응이며 또한 임산물 운반 등 산림경영의 효율성 제고, 고견사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에 있음.
- 고견사는 지역 불교문화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찰이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보호대책 미비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의상봉은 관내에서 등산객이 많기로 손꼽히는 산으로 산악사고 발생 시 구조차량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본 임도개설은 산불 대응력 강화와 산악사고 구조 접근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할 것임.
- 다만, 경사도가 높고 암반이 많은 지형 특성상 암반을 피해 자연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선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공 시 안전문제와 시공 후 임도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사 완화와 배수로 등이 설계단계에서 꼼꼼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임,
- 검토결과 임도개설사업을 위한 임도 편입 예정지 부분매입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②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건물의 신축)

### 1. 제안이유

- 1) 거창창포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일의 생태관광 명소 조성

2) 국민의 관광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창포문화관, 야외공연장, 다목적 놀이마당 등이 한 곳에 어우러진 생태·문화 복합시설로 운영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
- 2) 사업비 : 13,580백만원 (전환 5,500, 도 1,650, 군 6,430)
- 3) 사업기간 : 2023. ~ 2027.(5년간)
- 4)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3번지 등 7필지 일원
- 5) 사업량 : 조성면적 15,678m<sup>2</sup>(연면적 2,000.3m<sup>2</sup>)
- 6) 사업내용 : 창포문화관, 야외공연장, 다목적놀이마당 등

### 나. 취득재산 내역

1) 취득내역 (단위:m<sup>2</sup>,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목(형식)	연면적				
취득(신축)	건물	남상면 월평리 2273번지 등 7필지 일원	건물 1동	2,000.3	11,439,000	2027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	거창군

## 2) 주요시설

층 별	세부시설	연면적(m <sup>2</sup> )	비고
계		2,000.3	
지상2층	사무실, 부속실, 세미나&회의실, 휴게실, 계단&EV실, 화장실 훌&복도	549.95	
지상1층	전시실, 컨벤션홀, 시청각실, 부속실, 휴게실, 화장실, 로비&복도, 계단실&EV실, 필로티&캐노피	1,309.55	
지하1층	기전실, 계단실	82.5	
별동	경비실	14.40	
	야외무대	43.90	

## 다. 추진경과

- 1) 2020. 11. : 확장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원안가결)
- 2) 2021. 11. :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 3) 2022. 3. :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반영
- 4) 2023. 1. : 거창군계획위원회 심의·자문(원안수용)
- 5) 2023. 3. : 제2회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2023. 5. 22. 조건부 승인)
- 6) 2023. 9.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 7) 2023. 11. :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8) 2024.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9) 2024.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0) 2025. 7. :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 11) 2025. 7. ~ 10. : 각종 인허가 관련 부서 협의

## 라. 향후계획

- 1) 2025. 11. :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 2025. 11. : 토지수용 재결신청(지방토지수용위원회)
- 3) 2026. 1. ~ 3. : 지방재정투자 심사(1차) 의뢰(군→도) 및 승인
- 4) 2026. 1. : 경상남도계약심사 및 군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5) 2026. 3. : 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 이전
- 6) 2026. 4. ~ 2027.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마. 기대효과

- 1) 거창창포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의 기틀을 마련함과 더불어 국내 제일의 생태관광지로 발돋음
- 2) 국민의 다양한 관광욕구 충족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가

### 3. 사업비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4. 위치도 등 : [붙임2] 참조

### 5.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3.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②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건물의 신축) 건은

○ 거창창포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시설확충을 위해 창포원 연접부지에 창포문화관, 야외공연장, 다목적 놀이마당 등의 생태·문화 복합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5억 8,000만원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확장계획 심의, 군 관리계획 변경,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절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사업은 창포원 방문객 증가와 국가정원 추진 등으로 인해 창포원을 거창군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부합한다 할 것임.

- 다만, 세미나&회의실, 전시실, 컨벤션홀, 시청각실로 향후 수익구조를 보면 대관·전시가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활용률이 저하될 경우 재정부담이 우려되므로 시설 결정 단계에서 대관·전시기능의 수요 예측이 있었는지, 그 외 운영 수익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창포문화관, 야외공연장, 다목적놀이마당은 운영 프로그램 기획에 따라 시설의 가치가 결정될 것이므로 운영계획의 개략적인 방향은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임.
- 검토결과 본 사업은 창포원과 연계한 관광·생태·문화 복합 콘텐츠 구축과 국가정원 지정 기반 마련, 창포원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생활권 내 문화공간 확대 등 지역관광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1. 24.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라. 상정일자 : 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2. 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25.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에 대한 현 수탁자의 전문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 능력을 반영해 민간 위탁 기간을 연장(재계약)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관리 운영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다. 시설현황 : 골프연습장 1동, 철탑시설, 부대시설 1식

부지면적	건축물 규모				타석수	비거리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구 조		
3,971m <sup>2</sup>	지상2층	258.0m <sup>2</sup>	300.2m <sup>2</sup>	철근콘크리트조	10타석	100m

라. 위탁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

마. 선정방법 : 성과평가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서면) 선정

##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기간 연장(재계약) 필요성

- 1) 스포츠파크 실외 골프연습장 개축 사업 행정절차 이행(체육 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 등 경남도 사업승인 및 고시) 지연에 따른 2026년 하반기 착공 가능
- 2)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사업 착공시까지 시설 운영 공백 기간 발생
- 3) 시설 사용 중지 여부에 대한 이용회원의 문의가 많고, 대다수 회원 착공 전까지 해당 시설 이용을 희망함
- 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시 해당 시설의 노후회 및 단기간 위탁 조건으로 수탁자 모집이 불투명한 상황임
- 5) 현 수탁자의 다년간 해당 시설 전문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 능력을 반영한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

나.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 (성과평가)

#### 다. 향후계획

- 1) 성과평가 후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서면) : 2025. 12.
- 2) 위수탁계약 체결 : 2025. 12.
- 3) 위탁계약 운영 : 2026. 1. 1. ~ 12. 31.

붙임 1.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2. 관계 법령 1부. 끝.

## 5.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증·개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2026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재계약 방식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임.
-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시설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시설 운영 지속을 희망하고 있는 점에서 운영 필요성이 인정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간 연장 시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의회 주례 회의를 통해 민간위탁 기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고된 사항임.

- 또한 시설 노후 및 단기간 위탁 조건으로 공개 모집 시 수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현 수탁자의 전문성과 다년간 관리 경험을 고려할 때 재계약 추진은 타당함.
- 본 골프연습장은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고, 법령 및 조례상 민간위탁 근거가 명확하므로 본 동의안은 법적·절차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7. 토론요지 : 없음

## 8. 수정안 요지 : 없음

##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